

광주MBC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

제정 2010년 5월 20일

개정 2019년 5월 1일

2020년 3월 23일

제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광주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운영내규는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권한과 직무)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
4. 시청자평가원 선임(운영 시)
5.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운영 시)
6. 기타 방송문화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제4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간사를 선정할 수 있다.

제5조(후보자 공모)

- ①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 ② 후보자 공모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방송자막 등을 통해 고지한다.
-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다.

제6조(후보자 추천)

- ①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24조의 시청자위원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 ② 후보자 공모결과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때에는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사유)

- ①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 ②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후보자 선정)

- ①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방송에 대한 전문성, 연령 및 성별 균형 및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 및 추천위원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2배수 이상으로 한다.

제9조(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

- ①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를 노사 합의에 따라 동수로 구성하며, 노사가 각 4명씩 추천한다.
- ② 위원 선정 시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③ 위원은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으로 위촉한다.

- ④ 시청자위원 선정 후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과정 및 공모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제10조(임기 및 연임)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 시 정해진 임기는 위촉 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② 연임 여부는 위원의 출석, 의견제시, 위원회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10명 이상 또는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해촉)

- ①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사의 명예훼손, 제7조 2항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시청자와 내부 구성원이 알 수 있게 위원의 발언 내용, 방송사의 답변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개인

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 ⑤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
- ⑥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 시청자위원회가 요청할 시 시청자평가원이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 ⑦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또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조치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한다.
- ⑧ 시청자가 홈페이지의 시청자위원회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4조(수당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자료 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소관부서) 위원회와 관련된 지원 및 운영 업무는 기획심의부에서 담당한다. 단,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부서 명칭 변경 시에는 시청자 권익보호 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위촉한 위원은 차기 위원회 구성 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3. (대외공표) 이 내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외적으로 공표한다.